

요약

-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노인돌봄 정책은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재가돌봄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
- 다만,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재택 고령자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, 이를 보완할 다양한 서비스 공급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가돌봄정책은 가족돌봄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, 우리나라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64%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, 19.5%는 이용자의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음
- 일본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, 그 원인으로 ① 공적 급여의 낮은 보장 수준에 따른 재택 고령자의 돌봄 수요 미충족, ② 고령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부족, ③ 공적 급여 이외(이하 '비급여')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, ④ 비급여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, ⑤ 공적 급여 대비 높은 비용 부담, ⑥ 지자체의 민간 협력 경험·역량·정보·네트워크 부족 등을 지적함
-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'산복공창(産福共創)' 모델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·지원·매뉴얼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함으로써, 민간의 경제적 활동이 복지적 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산업·복지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함
-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재가돌봄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적 급여의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- 구체적으로,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 모델의 개발·실증·평가 및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,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1. 서론

-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노인돌봄정책은 2026년 시행될 「돌봄통합지원법」을 통해 본격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
 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, 돌봄통합지원법)은 지자체 단위에서 보건·의료·요양·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도록 규정함
- 그러나 재택 고령자의 돌봄 수요를 흡수할 다양한 재가서비스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가돌봄정책은 가족돌봄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
 -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, 노인맞춤돌봄사업, 지자체 자체 사업 등 공적 서비스는 제공 범위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재택 고령자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돌봄공백이 불가피함
 -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제시한 기존 급여의 개선 요구사항 가운데 ‘서비스 이용시간 확대’가 36.5%로 가장 높게 나타남¹⁾
 - 현재도 가족돌봄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가 다수이며, 가족돌봄의 부재로 인해 건강이 호전되더라도 요양시설 퇴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이용자의 건강 호전 이후에도 자택으로 모시지 못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돌봄 제공자 부재가 68.7%로 가장 높고, 이어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의 불편(16.7%), 자택 주거환경의 불편(7.2%), 돌봄 비용 문제(1.7%) 순으로 조사됨(이윤선 외. 2023)
-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문제로 부상하자,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급여 외(이하 ‘비급여’)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
 - 경제산업성에 따르면, 매년 약 10만 명이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, 가족돌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이직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약 9.2조 엔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전망됨²⁾
 - 경제산업성은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재택 고령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, 비급여 재가서비스의 비활성화가 가족돌봄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봄
- 본고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 배경과 방식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함
 -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연령 인구(15~64세)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, 가족돌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온 일본의 경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우리나라에서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중 경제활동 중인 비율은 64%, 이용자의 돌봄을 위해 퇴직을 경험한 비율은 19.5%로 나타남(이윤선 외. 2023)

1) 이윤경·이선희·강은나·김세진·남궁은하·최유정(2023), 『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』,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2) 經濟産業省(2024), “經濟産業省における介護分野の取組について”

2.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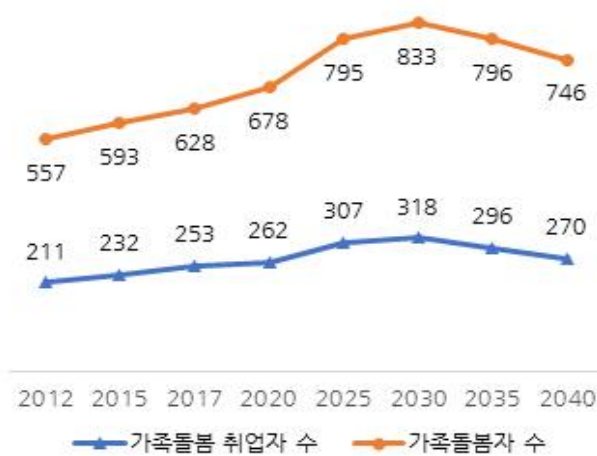
가. 배경

- 일본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자립적 생활을 이어가도록 일상생활권역 안에서 약 30분 이내에 주거·의료·개호·예방·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함
 -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·요양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, 지역별 인구구조·의료·개호·생활지원 인프라·재정력·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고려하여, 재가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, 자립생활 지원과 예방 강화, 지자체 자율적 시스템 설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
 - 2015년에는 전국 일률적 개호보험 급여를 축소하고, 요지원 1·2 등급 경증 고령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종합사업(総合事業)으로 전환함
- 다만, 재택 고령자와 더불어 경제활동과 돌봄을 병행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생산성 손실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
 - 가족돌봄자는 2020년 약 678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8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이 가운데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가족돌봄 취업자는 2020년 약 262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31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(〈그림 1〉 참조)
 - 가족돌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에 생산성 저하, 숙련 인력 이탈, 여성·중년층 경력단절 심화 등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에 손실을 초래함
 - 가족돌봄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, 돌봄 부담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, 특히 관리직 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³⁾
 - 매년 약 10만 명이 가족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돌봄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, 가족돌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이직으로 2030년에는 약 9.2조 엔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전망됨
 - 일과 돌봄의 병행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약 8조 엔, 돌봄이직으로 인한 노동손실은 약 1조 178억 엔, 신규인력 양성 비용은 약 1,289억 엔, 대체인력 채용 비용은 약 1,162억 엔으로 추산됨(〈그림 2〉 참조)

3) 日本総合研究所(2023), “令和4年度ヘルスケアサービス社会実装事業(サステナブルな高齢化社会の実現に向けた調査) 報告書”

〈그림 1〉 일본의 가족돌봄 취업자 추이

(단위: 만 명)



〈그림 2〉 일본의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계

(단위: 억 엔)



주: 가족돌봄 취업자 수는 가족돌봄자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의미함
 자료: 經濟産業省(2024)

○ 가족돌봄 취업자와 돌봄이직 증가의 배경에는 공적 급여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, 비급여 재가서비스의 공급 부족, 그리고 이에 대한 낮은 정보 접근성이 자리하고 있음

- 개호보험 서비스만으로는 재택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, 다양한 비급여 재가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재가요양에 어려움이 발생함⁴⁾
 - 日本総合研究所(2017)에 따르면, 가족돌봄자의 64.1%는 일·돌봄 양립을 위해 비급여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59.8%는 자비 부담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임(〈그림 3〉 참조)⁵⁾
- 또한, 비급여 재가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더라도, 사회 전반의 노인돌봄 관련 이해도(Literacy)가 낮고 돌봄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관련 경험이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
 - 예컨대, 일과 노인돌봄에 관한 미디어 보도량은 일과 육아 보도량 대비 약 1/3 수준에 그치고 있어, 사회적 의제화와 미디어 노출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임⁶⁾

4) 經濟産業省(2025b), “高齢者・介護関連サービス産業振興に関する戦略検討会取りまとめ”

5) 日本総合研究所(2017), “平成28年度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 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 介護に取り組む家族の支援に資する 民間サービスの普及・促進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”

6) 經濟産業省(2023), “令和4年度中小企業実態調査事業-仕事と介護の両立に係る機運醸成に向けた関連調査事業報告書”

〈그림 3〉 일본: 일·돌봄 양립을 위한 비급여 재가서비스에 대한 가족돌봄자의 인식과 이용 의향



주: 1) 2017년 가족돌봄자 1,030명(취업자 824명, 무직자 206명)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, 각 설문 문항은 “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호보험 급여뿐만 아니라, 보험 외 자부담 서비스도 필요하다”와 “일과 가족돌봄을 병행하기 위해, 비급여 자부담 서비스라도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고 싶다”임

2) 비급여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은 64.1%(=17.4+46.7), 활용 의향은 59.8%(=16.5+43.3)임

자료: 日本総合研究所(2017)

○ 이에 경제산업성은 재택 고령자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단순한 재가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머무르기보다,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설계·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·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

- 개호보험, 지역지원사업, 종합사업 등 공적 서비스는 범위와 재정이 제한되어 있어, 고령자의 생활 전반을 지탱하기 어렵고,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재정·인력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
- 특히 초기 허약 단계(Pre-frail)나 요지원 단계 고령자와 같이 아직 개호필요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돌봄 욕구는 공적제도로 충족되지 않음
- 이를 민간서비스가 분담할 경우 공적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급여를 중증 고령자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, 한정된 전문 인력은 단순 생활지원이 아니라 의료·요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음

○ 다만, 지자체가 민간 협력의 경험·역량·정보·네트워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,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지침화하여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

- 지자체, 특히 복지 관련 부서는 공적 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상 공적서비스 중심의 인식 편중, 기업 연계 구축을 위한 경험·역량·정보·네트워크의 부족, 그리고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연계에 따른 공정성·중립성 우려로 인해 민간서비스 활용에 소극적임
- 민간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의 복지적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, 복지 관계자와의 소통 제약, 고령자 대상 접근의 한계로 인한 높은 고객 유치 비용, 그리고 지자체별 개별 협상 구조로 인한 규모 확대의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함
 - 고령자에 대한 접근 경로의 제약은 수요를 실제 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고객유치 비용을 유발하며, 지자체와의 개별 협상 구조는 사업모델의 확산을 지연시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경제산업성은 가족돌봄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재가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함

- 재택 고령자와 가족돌봄자의 입장에서 보면, ① 고령자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의 부족, ② 낮은 정보 접근성, ③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미비, ④ 보험급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잠재 수요가 시장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
-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①·② 과제의 해결을 위한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③의 신뢰성 확보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응하며, ④의 비용 문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함(經濟産業省 2024)
 -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·가족·케어매니저(돌봄계획조정자) 등 관련 당사자가 안심하고 이용·추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적·운영적 장치를 검토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로 함

○ 경제산업성은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복공창(産福共創) 모델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·지원·매뉴얼화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로 함⁷⁾

- 산복공창 모델 개발사업은 지역의 고령자 복지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산업·복지 연계 모델로, 민간 경제활동이 복지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·복지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시도임
-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① 지자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기반 정비, ② 선도적 공사협력 모델의 개발·실증·평가 및 확산, ③ 정보전달자와 고령자 참여를 포함한 환경 조성 등 세 축을 바탕으로, 구체적인 지침·모델·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임
- 구체적으로, 민간과의 연계 의지를 가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 자원 가시화와 보유 자산 활용을 지원하고, 민간 연계의 제도적 자리매김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함
 - 지역 내 돌봄·생활 지원 자원을 데이터로 체계화하여, 지자체와 민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원(토지·시설·공공건물·학교 폐교 등)을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접근이 가능함
-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공사협력 모델을 개발하고,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·평가하여 지자체 간 확산 가능성을 체계화하는 한편,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(국 및 시도부현) 단위의 생활지원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선도적 모델이 전국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
 - 시범사업의 성과는 민간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 가능성,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효과, 고령자와 가족돌봄자의 생활 만족도 및 건강 지표 개선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됨
- 서비스가 실제 고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케어매니저와 가족 등 주요 정보전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, 민간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업계 단체와 협력하여 신뢰성을 확보함

7) 經濟産業省(2025), “令和7年度「産福共創モデル創出事業」公募説明会”

- 비급여 재가서비스는 급여 서비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미비로, 업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인증, 표준화된 품질 기준,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함

○ 중점적으로 논의된 비급여 재가서비스는 재택 고령자의 노쇠예방 및 사회참여 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생활기능 유지 및 요양지원 등 3개 영역, 16개 서비스 유형으로 구체화됨

- 노쇠예방 및 사회참여 지원 영역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연결 촉진을, 일상생활 지원 영역은 재택 고령자의 생활 유지 기반 보안을, 생활기능 유지·요양 지원 영역은 신체·인지 기능의 유지와 요양 과정에서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⁸⁾

〈표 1〉 일본의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 제약 요인과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향

구분	제약요인	경제산업성의 대응 방향
재택 고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령자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 부족 • 낮은 정보 접근성(돌봄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) •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환경의 미비 • 보험급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복공창 모델 시범사업 추진 •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• 비용 문제는 중장기 검토 과제화
지자체 (복지부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적 서비스 중심의 인식 편중 • 민간 협력 경험·역량·정보·네트워크 부족 • 특정 기업과 협력 시 공정성·중립성 우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·모델 제공 • 민간 연계 인센티브 제도화 • 광역시도 단위 지원 기능 강화
민간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사 서비스의 복지적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 • 복지제도 이해 및 복지 관계자와의 소통 한계 • 고령자의 욕구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• 지역 고령자의 실태, 동향, 서비스 동향 파악 한계 • 고령자 대상 홍보·접촉 제약에 따른 고객 확보 비용 상승 • 지자체별 개별 협상 구조로 인한 규모 확장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인증·정보 플랫폼 구축 • 지역 자원 가시화 및 네트워크 지원 • 모델 실증·평가를 통한 확산 촉진

자료: 經濟産業省(2025), “第1回高齢者・介護関連サービス産業振興に関する戦略検討会”; 經濟産業省(2025), “高齢者・介護関連サービス産業振興に関する戦略検討会取りまとめ”; 經濟産業省(2025), “令和7年度「産福共創モデル創出事業」公募説明会”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

3. 결론

○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3월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재가돌봄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, 일본 사례에서 보듯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재택 고령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

-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력은 제한적이고, 공보험 급여의 획일적 구조는 개인이나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
8) 다음의 16개 서비스 유형이 있음: 운동지원(체력단련 프로그램, 생활체조 교실 운영 등), 취미·레저활동 지원(여행, 문화·예술 활동, 동호회 등), 학습·취업(디지털 활용 교육, 직업매칭 등), 노후·위험 대비(민영보험, 유언·상속, 장례준비 등), 모임·교류(지역 커뮤니티 및 살롱 운영 등), 식사지원(조리, 배달 등), 가사 지원(청소, 세탁, 스마트가전 활용 등), 안부확인·긴급연락(센서 활용, 정기적 방문 등), 외출·이동 지원(동행, 교통수단 확보 등), 소품·물품 운반 지원, 주거환경 정비, 행정·계약 절차 대행(병원 예약·서류 제출, 공공서비스 신청 등), 부동산·토지·주식 등 자산 관리 및 처분, 기타 생활지원(반려동물 산책, 생활용품·가전 설치 등), 식사·복약 지원(섭식보조, 특별식이 관리, 복약지도 등), 위생·배설 지원, 의사결정 지원(정보제공, 가족·전문가와의 대화 촉진 등)

- 고령 인구와 중증도 증가로 1인당 급여량이 누적 확대되고 급여 수가의 체계적 인상으로 지출 압력이 상승하는 반면, 보험료율 인상은 가계 부담과 직결되어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가 존재함

○ 재택 고령자에게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, 그 부담의 정도와 양상은 지자체가 보유한 재정력, 인적·물적 자원, 그리고 행정적 역량의 영향을 받음

- 현재도 요양 필요도의 경중과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으며, 가족돌봄의 부재로 인해 건강이 호전되더라도 요양시설 퇴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의 재가돌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, 비공식 돌봄 부담, 일·돌봄 양립 곤란,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

○ 재가돌봄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, 공적 급여의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
-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복지정책적 의의뿐만 아니라 노동력 유지와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경제정책적 의의도 존재함
 - 공적 서비스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운동·영양·이동·외출·사회참여 지원과 같은 수요를 민간이 보완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, 가족돌봄 취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, 공보험 재정의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정된 전문 인력이 고도의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됨
 - 또한 고령자 관련 서비스 시장은 성장 산업의 하나로, 지자체가 민간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사회적 검증과 확산이 촉진될 수 있음
- 중요한 점은 산업진흥 목적이 복지적 목적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,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것임

○ 정부는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 모델의 개발·실증·평가 및 확산을 추진하고, 동시에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- 일본은 고령화 추이, 장기요양보험 제도,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정책적으로 한발 앞서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조 대상임
-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비롯한 공적 서비스는 주로 요양필요 상태에 자원을 집중하고, 운동·영양·이동·외출·사회참여와 같은 예방이나 경중 단계의 저비용 개입 서비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
- 재가돌봄정책은 지자체(시군구)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나, 지자체간 민간 연계를 통한 재가서비스 확충 수준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